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의무직렬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의무직렬공무원수당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중 “지방의무직렬공무원”을 “지방의무직렬공무원 및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하고 “별표”를 “별표1”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1]

지방의무직렬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구분	전문의	일반의
2~3급	월1,010,000원	월1,010,000원
4급	월909,000원	월854,000원
5급	월909,000원	월818,000원

※ 전문의는 의료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의사로 한다.

[별표2]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구분표

근무연수	가급	나급
5년 이상	월1,312,000원	월973,000원
4년 이상	월1,306,000원	월967,000원
3년 이상	월1,300,000원	월961,000원
2년 이상	월1,295,000원	월956,000원
2년 미만	월1,289,000원	월950,000원

※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3조 제1항 및 별표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기준에 의거 가급은 전문의, 나급은 일반의를 말함.(비고 : 근무연수는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

서울특별시관광안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542
------	-----

2004년 9월 7일
교육문화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4년 8월 19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04년 8월 24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151회 임시회 제2차 교육문화위원회(2004.9.7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제안설명자 : 문화국장 권영규)

- 가. 개정이유
 - 서울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관광안내소에 대해 그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관광안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관광안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내소의 시설관리 및 직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함.(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윤병국)

- 서울시에서 현재 운영중인 관광안내소는 9개소로 그간 운영결과에 따르면 타 기관(관광공사 등)에서 운영하는 안내소와 시설위치가 인접하여 안내기능이 중복되거나 관광안내 수요가 줄어들어 안내소의 운영실적이 미비한 3개소를 폐쇄 및 통합 정비하고
- 서울시 직영 관광안내소 현황

안 내 소			운 영 인 력				정 비 대 상
계	종 합	간 이	계	계약직	통 역 도우미	자 원 봉사자	○ 총 3개소 -폐쇄 1(신촌간이) -통합 1(이태원간이) -이관 1(잠실종합)
9	5	4	199	8	41	150	

※ 총 33개소 : 시직영 9, 자치구 6, 관광공사 3, 여행협회 6, 기타 7

- 관광안내소 운영방식을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관광안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등 관광안내소의 운영을 개선함으로써 서울을 찾는 내외국인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어 보임.
- 다만, 운영개선을 지나치게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9개소의 관광안내소를 3개소 줄여 6개소로 통·폐합함으로써 관광안내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필요하고

그동안 근무해온 서울시 계약직원(8명)이 민간위탁으로 인하여 실직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위탁기관에서 이들을 고용 승계하는 방안 등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관광안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관광안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운영의 위탁) ①시장은 안내소(안내시설물을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내소의 시설 관리 또는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내소의 시설 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행정사무원민간위탁에관한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청계천북원시민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544
------	-----

2004년 9월 7일
건설위원회